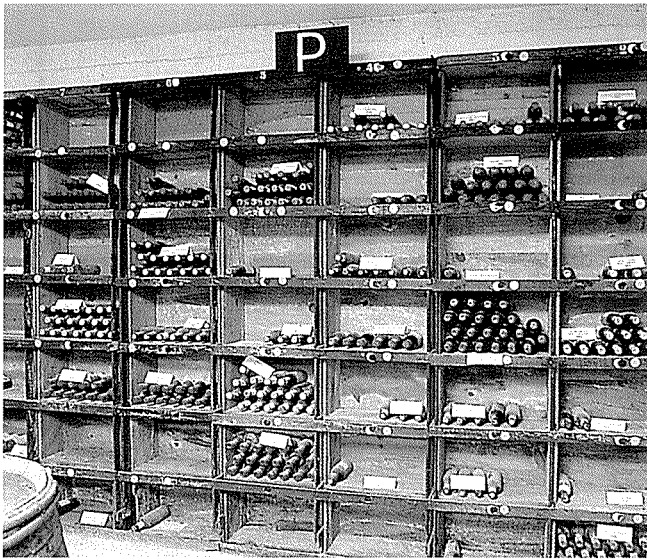


제과점도 주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공포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해설

■ 취재 / 손인수



앞으로는 제과점에서도 와인, 샴페인 등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조리장도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제과점 내에 무대를 설치, 공연을 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2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과점이 속해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업소 내에 주류를 반입하거나 보관할 수 없었으나 이 항목이 삭제돼 제과점에서의 주류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제과점에서 케이크와의 세트 상품으로 샴페인 및 와인을 취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당장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영제과점의 경우 주류를 취급하려면 먼저 세무서에 주류판매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절차는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영업허가증(또는 신고증) 사본을 지참하고 세무서 납세지원센터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즉시 주류판매신고 번호가 기재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받음으로써 끝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시 주류 판매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해야 각 가맹

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주류를 통신판매할 자격 및 품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민속주나 농민,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조리장 시설 기준도 완화, 같은 건물내 어디에도 가능
개정안은 또 조리장 시설기준에서 손님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휴게음식점 중 제과점은 같은 건물 내일 경우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과점에서 조리장을 확장, 이전하는 게 수월해졌다.

제과점 안에 무대를 설치하고 연주회 등 공연이 가능해진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그러나 방음장치를 해야 하며 자동반주기를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제과점 신규 개설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99년 11월 13일 공포)의 후속 조치로 영업 신고를 받은 신고 관청은 지체없이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 수리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처럼 그동안 제과점 운영과 관련,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조항들이 개선되자 업계는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리장 시설 기준 완화로 공간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생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과점에서 주류 판매 금지 조항에 묶여 무알콜 샴페인을 판매해 왔는데 앞으로는 선물용 케이크와 잘 어울리는 와인, 샴페인을 세트화해서 판매함으로써 선물용 제품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
| 제13조(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생략) | 제13조(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 <u>휴게음식점영업</u> ----- (생략) | 식품위생법 시행령 (99. 11. 13 공포 시행) |
| | <신설> 제27조 제5항 및 제7항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영업신고증 을 지체없이 교부하되, 신고수리후 1개월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
| | <신설> 별표 9 제8호 가목 (마)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은 무대시설 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해야 한다. | |
|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제8호 가목 (2)(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 어 있어야 한다. <u>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 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제8호 가목 (2)(가) ----- <u>다만, 영 제7조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중 과자점 형태의 영업소로서 동일건물내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시행령 제2조 제2호가목 및 동조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u>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99. 12. 29 공포 시행) |
|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제5호 거목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업소내에 주류를 반입(손님이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향·맛을 다양하게 조리하기 위하 여 첨가(알콜분 1도 이내에 한한다)하기 위한 경 우와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제5호 거목 <삭제> | |